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 123 호 2014. 12. 31(수)

조 례

- 남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1
- 남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3
- 남원시예가람길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4
- 남원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11
- 남원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 관한 조례.....24
- 남원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폐지조례.....28
- 남원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29
- 남원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33
- 남원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34
- 남원시화장품산업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72

규 칙

- 남원시축제관광위원회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87

고 시

○2015년도건물기타물건시가표준액결정고시.....89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9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2월 31일

남원시 조례 제 1130 호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지급대상	지 급 액
남원시의회 의원	월1,593,290원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2월 31일

남원시 조례 제 1131호

남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2월 31일

남원시 조례 제 1132 호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자에 대하여”를 “운영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
1호 중 “1회에 한”을 “1회에 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회에 한”을 “1
회에 한정”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일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운영에 관하여는”을 “운영은”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될 때”를 “해당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16조 제3항 제1호 중 “사정에 의하여”를 “사정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천재지변 및”을 “천재지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전일”을 “전날”로 한다.

제17조 제2항 후단 중 “때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침부한”을 “붙인”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될 때”를 “해당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한 때”를 “아니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하였을 때”를 “하였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한 때”를 “사용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한 때”를 “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발생하였을 때”를 “발생하였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대하여는”을 “는”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시설 사용료(제16조제2항 관련)

○ 사용료 기준: 1실당 1일 2시간 기준

구 분		면 적	금 액	용 도
창작 공간 (1층)	미술관 전시실	91.78㎡	· 1일(8시간) 30,000원	· 문화예술관련 작품 전시
창작 공간 (2층)	회 의 실	35.86㎡	· 고등학생 이하 2,000 원 · 일반 5,000원 ※ 1시간 추가시 1,000 원	· 문화예술단체 소회의실 운영
	댄 스 연 습 실	63.96㎡	· 고등학생 이하 3,000 원 · 일반 7,000원 ※ 1시간 추가시 1,000 원	· 단체공연을 위한 연습공간 · 워크숍, 세미나 개최 등
창작 공간 (3층)	연습실 1	11.09㎡	· 고등학생 이하 1,000 원 · 일반 2,000원 ※ 1시간 추가시 1,000 원	· 음악, 국악 등 2~3명 연습실
	연습실 2	14.35㎡	· 고등학생 이하 1,000 원 · 일반 3,000원 ※ 1시간 추가시 1,000 원	· 음악, 국악 등 4~5명 연습실
	연습실 3	18.60㎡	· 고등학생 이하 2,000 원 · 일반 4,000원 ※ 1시간 추가시 1,000 원	· 음악, 국악 등 6~7명 연습실
	연습실 4	22.00㎡	· 고등학생 이하 2,000 원 · 일반 5,000원 ※ 1시간 추가시 1,000 원	· 음악, 국악 등 7~8명 연습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육성 업종 · 사업의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육성 업종 · 사업 <u>운영자에 대하여</u> 각 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기준, 지원신청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1. 점포 보수비: <u>1회에 한하여</u> 사업비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1,000만원 이내 지원</p> <p>2. 간판 설치비: <u>1회에 한하여</u> 사업비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150만원 이내 지원</p> <p>3. ~ 5. (생 략)</p>	<p>제4조(육성 업종 · 사업의 지원) - ----- <u>운영자에게</u>----- ----- ----- -----.</p> <p>1. ----- <u>1회에 한정</u>----- ----- -----</p> <p>2. ----- <u>1회에 한정</u>----- ----- -----</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 략)</p> <p>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한다</u>.</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남원지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p>1. (생 략)</p> <p>2. 예가람길 인근 주민과 상가</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호선(互選)한다</u>.</p> <p>④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변영회의 일원 등

⑤ (생략)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제10조(사무국의 설치) ①·②

(생략)

③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금을 교부받는 운영자에 대한 제재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4조의 지원금을 지원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4. (생략)

----- 구성원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
- 한 번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무국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운영은-----.

제12조(지원금을 교부받는 운영자에 대한 제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된 경우-----.

1. 거짓-----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제16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
 ② (생 략)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4. (생 략)
 5.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30
 제17조(수탁자의 선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예가람길 시설을 계속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운영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사정으로-----

 -
 2. 천재지변,-- -----

 3. 4. (현행과 같음)
 5. ----- 전일-----

 --
 제17조(수탁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때에는 -----

 ③ -----

 ----- 붙인-----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9조(위탁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때
4.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을 상실 한 때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제5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위탁 취소) ① -----

해당된 경우-----
-----.

1. -----
----- 아니한 경우
2. -----
하였을 경우
3. -----
----- 사용한 경우
4. -----
----- 한 경우
5. -----
----- 발생하였을 경우

② ----- 사유로-----
----- 는-----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2월 31일

남원시 조례 제 1133 호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평생학습조례”를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를 “제5조에 따라 남원시”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학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추진되는 평생학습 진흥정책 및 지원 사항은 시민들에게 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평생학습기관에 적용된다.

제4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평생학습위원회 설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시 평생학습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위원은 시청 및 교육지원청 평생학습 관계 공무원, 시의원, 학계, 사회단체, 사설교육단체, 평생교육관련 단체장 등 각계 각층의 인사와 평생학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학습 정책 결정
2. 평생학습관·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의 제목“(회의 등)”을“(위원장 등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 제목“(평생학습센터의 설치)”를“(회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평생학습관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평생학습관의 운영) 평생학습관은 위원회에 자문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직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직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감독)”을 “(평생교육사의 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사

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에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시행규칙)”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따라야 한다.

② 평생학습관은 감사 또는 조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 시장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상담을 제공하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문해교육)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내 평생교육기관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align="center"><u>남원시 평생학습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u>남원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u>추진되는 평생학습 진흥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민들에게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남원시 관내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에 적용된다.</u></p>	<p align="center"><u>남원시 평생학습 조례</u></p> <p>제1조(목적) ----- ----- <u>제5조에 따라 남원시</u>-----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평생교육”이란 <u>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u></p> <p>2. “평생교육기관”이란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u></p> <p>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u>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u></p>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학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중 학교교과 교
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
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
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
활에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
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
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
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평생학습위원회 설치 구성)

① 「평생교육법」 제14조제4
항의 규정에 의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남원시 평생학습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
원장 1인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추
진되는 평생학습 진흥정책 및
지원 사항은 시민들에게 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평생학습기
관 및 시설에 적용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시청 및 교육청 평생학습 관계 공무원, 시의원, 학계, 사회단체, 사설교육단체, 평생교육관련 단체장 등 각계 각층의 인사와 평생학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남원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1. 남원시 평생학습 정책 결정
- 2.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기타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제4조(평생학습위원회 설치 구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시 평생학습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신 설>

<신 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④ 위원은 시청 및 교육지원청 평생학습 관계 공무원, 시의원, 학계, 사회단체, 사설교육단체, 평생교육관련 단체장 등 각계 각층의 인사와 평생학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학습 정책 결정
2. 평생학습관·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 2.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간 네트워킹 추진
- 3.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에 대한 연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4. 강사 관리 전문 은행제 운영
- 5.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 6.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7.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9조(평생학습센터의 운영) 평생학습센터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하며, 필요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직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수행하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2. 평생교육 상담
-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 5.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평생학습관의 운영) 평생학습관은 위원회에 자문하여 운

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6조제1항에 의거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도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학습센터 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센터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시정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영하며, 필요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직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직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에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이 경우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따라야 한다.

② 평생학습관은 감사 또는 조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 시장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상담을 제공하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문해교육)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내 평생교육기관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2월 31일

남원시 조례 제 1134 호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남원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경력관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 사회복지 업무담당과장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장
 2. 남원시의회 의원
 3. 그 밖의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2월 31일

남원시 조례 제 1135 호

남원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2월 31일

남원시 조례 제 1136 호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이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적인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
2. 협약기간 및 비용
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
4. 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
5. 협약의 해지

6. 효력 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① 사실조사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지연처리
2.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3.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②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이 내린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으로 하여금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및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실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

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2월 31일

남원시 조례 제 1137 호

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2월 31일

남원시 조례 제 1138 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남원시 재난
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

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시 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시 대책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 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남원시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제3조(시 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시 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시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시 공무원과 재난관리 책임기관·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시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목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남원시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제

제6조(시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시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자연재난대책기간
-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 대책본부 운영체제 및 실무반 편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시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준비단계 : 재난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과 임무 및 역할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소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임무와 역할은 별표 5와 같다.

② 비상단계 시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메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시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시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⑤ 시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시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시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조정

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상황실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 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시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시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시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시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 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시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 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① 시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시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시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제12조(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시장
 2. 국·소장
 3. 그 밖에 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 대책본부회의는 시 대책본부장 또는 시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 ④ 시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시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 부서장으로 한다.
- ⑥ 시 대책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 ⑦ 시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시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① 시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 ② 시 대책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③ 시 대책본부장은 시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해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을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지역 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 기관의 관계자도 시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 대책본부에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15조(시 대책본부회의의 기록 등) 시 대책본부장은 실무반에게 시 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시 대책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재난상황의 관리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시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시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시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대처 및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시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시 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및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시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시 대책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 및 도 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 대책

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9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 ①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시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각급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 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시 대책본부와 각급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시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시 대책본부 및 유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 · 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22조(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등) ① 시 대책본부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 · 예비군 · 사회봉사명령자 · 공무원 · 경찰 · 소방공무원 · 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 · 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시 대책본부장은 자연재난 발생이 예견되거나 자연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전라북도지사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공공시설에는 7일 이내, 사유시설(주택, 농경지, 염전,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양식시설 등을 포함한다)에는 14일 이내에 보고

다. 피해확정액 : 중앙합동조사단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의 조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보고

2. 보고방법 :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3. 보고서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되,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따라 보고

제25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시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시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전라북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제26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관할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위험정보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 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징후
2. 재난 및 사고 시 국민의 대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국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6장 보칙

제28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 시 대책본부장은 국민 및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시 대책본부 문서관리) ① 시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② 시 대책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시 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전결사항) 차장, 통제관, 담당관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31조(수당 및 급식 등) ① 재난안전상황실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을 위한 재난담당부서의 상황근무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황근무자에게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 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관계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를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 1]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제4조제3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홍보전산과
교육부	4.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체육과
외교부	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총무과
법무부	6.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국방부	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재난과
국민안전처	8.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는 제외한다-우리도 해당 없음) 9. 정부중요시설 사고(우리도 해당 없음) 10.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11. 화재, 12. 위험물 사고 1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14.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15.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16. 지진, 17. 화산, 18. 낙뢰 19. 가뭄	- 안전재난과 " " " " 관련부서 (농정과)
문화체육관광부	20.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농림축산식품부	21. 가축 질병 22. 저수지 사고	축산과 농정과
산업통상자원부	23.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4. 원유수급 사고 25.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26. 전력 사고, 27.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경제과

보건복지부	28. 감염병 재난, 29.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환경부	30.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31.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2.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33.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34. 황사	환경과 수도사업소 환경과 환경과 안전재난과
고용노동부	35.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36.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우리도 해당 없음) 37. 고속철도 사고 38.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39. 도로터널 사고 40.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41. 육상화물운송 사고, 42. 지하철 사고, 43. 항공기 사고 44.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 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수도사업소 교통과 교통과
해양수산부	45.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46. 조수(潮水) 47.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8. 해양 선박 사고	-
금융위원회	49.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경제과
원자력안전위원회	50. 원자력안전 사고, 51.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재난과
문화재청	52.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산림청	53. 산불, 54. 산사태	산림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2]

준비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상시대비단계

○ 편성기준

실 무 반		
구성인원	총 6명	
정보수집 (6명)	재난상황관리팀 (4명)	○ 팀장 : 남원시 재난상황실 상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6급상당의 공무원 1명 ○ 팀원 : 남원시 재난상황실 재난정보업무를 담당하는 7급상당의 공무원 3명
	유관기관지원팀 (2명)	○ 남원소방서, 남원경찰서 등 6급상당 공무원 각 1명

비고 : 1. 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재난안전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전대비단계

○ 편성기준

실무반		
구성인원	총 6 + a 명	
상황 관리 총괄 (6명)	반 장(1)	담 당 관
	상황총괄관리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총괄관리(5) - 재난 정보 수집 및 전파(3), - 재난 상황관리(2),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a)		긴급생활지원(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홍보전산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등), 에너지공급복구(경제과), 재난자원지원(안전재난과), 교통대책(교통과), 의료방역서비스(보건소), 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과), 자원봉사관리(총무과), 재난수습홍보(홍보전산과), 수색구조구급(소방서), 사회질서유지(경찰서)

※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협업기능 부서별 1명씩 상황실 근무, 읍·면·동 1명씩 상황 근무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비상 I 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주의보

호우·대설경보

나. 태풍 : 예비특보 발효 시

2. 실무반 편성 : 6명+ a

통 제 관	본부장, 차장 보좌	
담 당 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6+a명	
상황 관리 총괄	반 장(1)	재난상황실장
	상황 관리 총괄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총괄부서(5) - 재난 정보 수집 및 전파(3) - 재난 상황 관리(2),
시설응급복구 등 12개 협업기능(a)	긴급생활지원(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홍보전산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등), 에너지공급복구(경제과), 재난자원지원(안전재난과), 교통대책(교통과), 의료방역서비스(보건소), 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과), 자원봉사관리(총무과), 재난수습홍보(홍보전산과), 수색구조구급(소방서), 사회질서유지(경찰서)	

※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협업기능 부서별 1명씩 상황실 근무, 읍·면·동 1명씩 상황 근무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경보 발효 시

나. 태풍 :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2. 실무반 편성 : 8+α+β

통 제 관	본부장, 차장 보좌	
담 당 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8+α+β명	
상황 관리 총괄 (8명)	반 장(1)	담 당 관
	상황 관리 총괄반(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총괄부서(6) - 재난 정보 수집 및 전파(3), - 상황보고서 작성(1) - 재난 상황 관리, 상황 분석 평가(2),
	행정지원반(1)	- 총무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지원(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홍보전산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등), 에너지공급복구(경제과), 재난자원지원(안전재난과), 교통대책(교통과), 의료방역서비스(보건소), 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과), 자원봉사관리(총무과), 재난수습홍보(경찰서), 수색구조구급(소방서), 사회질서유지(경찰서)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β)	- 육군제7733부대3대대, 남원기상대 한국전력공사남원지사, KT남원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남원 순창지사 등	

○ 근무방법

- 1). 상황 관리 총괄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협업기능 부서별 1명씩 상황실 근무, 읍·면·동 2명씩 상황 근무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 가. 호우·대설 : 광역적인 호우·대설경보 발령시 또는 대규모피해 발생 시
- 나. 태풍 : 광역적인 태풍경보 발령 시 대규모피해 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 8+α+β

통제관 (재난관련국소실장)	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관련부서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8+α+β명	
상황관리 총괄(8)	반장(1)	담당관
	상황관리 총괄반(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총괄부서(6) - 재난 정보 수집 및 전파(3), - 상황보고서 작성(1) - 재난 상황 관리, 상황 분석 평가(2),
	행정지원반(1)	- 총무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지원(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홍보전산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등), 에너지공급복구(경제과), 재난자원지원(안전재난과), 교통대책(교통과), 의료방역서비스(보건소), 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과), 자원봉사관리(총무과), 재난수습홍보(경찰서), 수색구조구급(소방서), 사회질서유지(경찰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β)	- 육군제7733부대3대대, 남원기상대 한국전력공사남원지사, KT남원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남원 순창지사 등	

○ 근무방법

- 1). 상황 관리 총괄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협업기능 부서별 1명씩 상황실 근무, 소관부서 1/2명씩 비상 근무, 읍·면·동 1/2명씩 비상 근무

2.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

자연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6. 재대본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안전재난과
		1. 영상회의 준비·운영 2. 주요인사 주재회의 등 현장방문 일정수립, 자료 작성	주관부서
	상황보고서 작성	1.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3. TV 방송 모니터링 4.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조사	안전재난과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재대본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주관부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 재대본회의 개최 2.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안전재난과
		1.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관리 2.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3. 비상근무 단계 결정 4.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5.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6.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7.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8.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주관부서
	행정지원	1.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3.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총무과
	긴급생활 안정지원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홍보전산과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시설응급복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시설별 해당실·과 건설과 등
에너지 기능복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경제과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안전재난과 등
교통대책	1. 재난발생지역 교통 통제현황 파악 2. 교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육상교통·운수분야 긴급수송 지원 4. 내륙에서의 유도선 운항 통제실시(안전재난과)	교통과
의료·방역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소
재난현장 환경정비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 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환경과
자원봉사관리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총무과 건축과
재난수습홍보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홍보전산과
수색·구조·구급	1. 재난지역 수색·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소방서 수도사업소
사회질서유지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경찰서 건설과 교통과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8+a+β

통제관 (재난부서 국·소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부서 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8+a+β명	
상황 관리 총괄 (8)	반장(1)	담당관
	상황 관리 총괄반 (6)	○ 재난상황관리 총괄(6) - 재난 정보 수집 및 전파(3), - 상황보고서 작성(1) - 재난상황관리, 상황분석 평가(2),
	행정지원반 (1)	- 총무과 직원(1)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a)	긴급생활지원(주민복지과), 긴급통신지원(홍보전산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등), 에너지공급복구(경제과), 재난자원지원(안전재난과), 교통대책(교통과), 의료방역서비스(보건소), 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과), 자원봉사관리(총무과), 재난수습홍보(경찰서), 수색구조 구급(소방서), 사회질서유지(경찰서)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육군제7733부대 제3대대, 남원기상대 한국전력공사남원지사, KT남원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남원 순창지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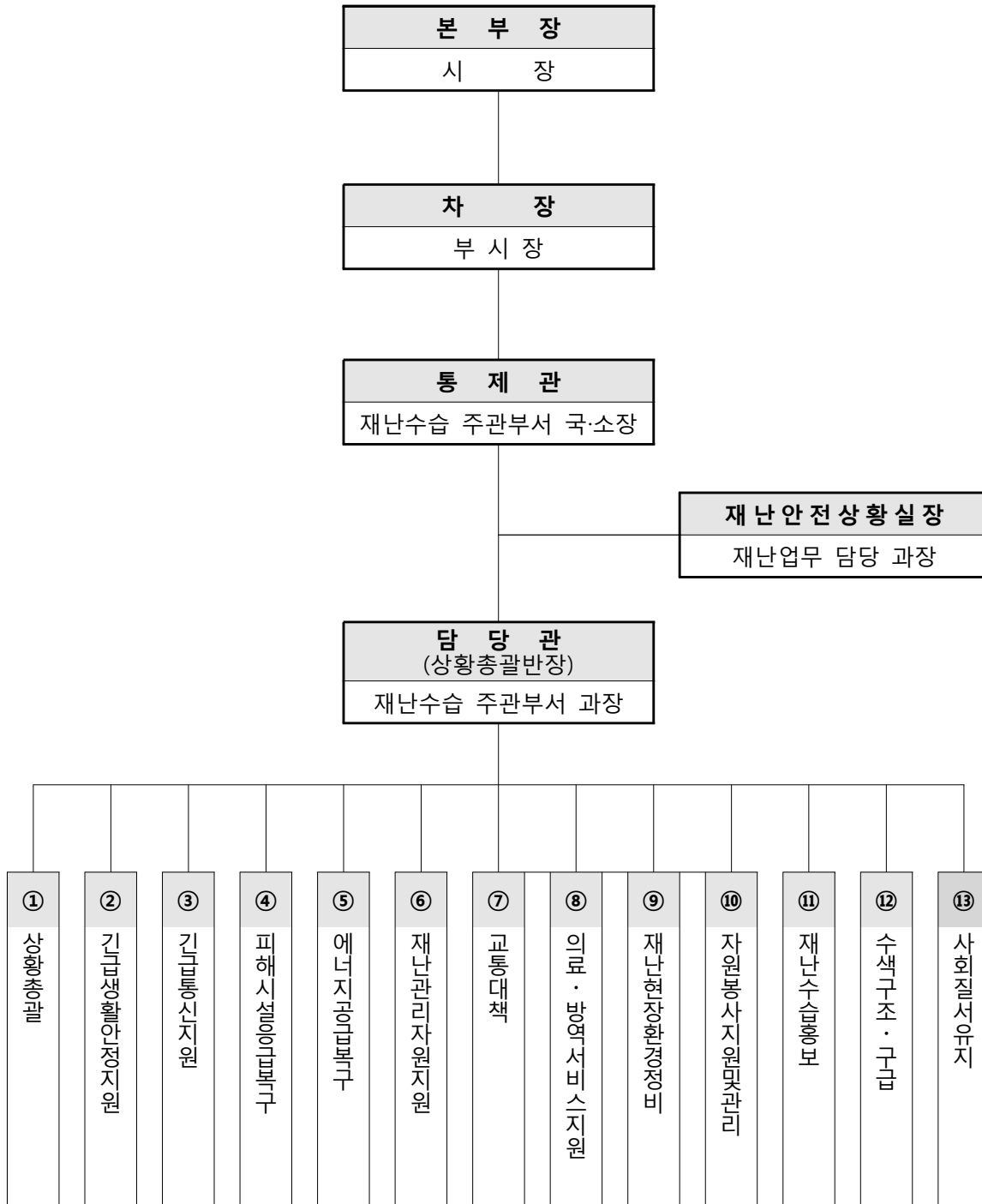
※ 근무 :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상황총괄반	상황보고서 작성팀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상황관리팀 1. 재난상황관리 기능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행정지원팀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협업 기능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3. 긴급통신 지원기능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4. 피해시설 응급복구 기능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7. 교통대책 기능	○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제독 및 기동방역제독반 편성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11. 사회질서 유지 기능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12. 재난수습 홍보 기능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13. 재난지역 수색·구조·구급 기능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 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도



※ 비고 : 준비단계 및 자연재난 비상단계 시에는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함.

[별표 6]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제25조제2항 관련)

구분	산 정 기 준
1.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국고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kg)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3.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4.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그 밖에 사항	법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7]

시·도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제30조 관련)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본부장 결 재
		담당관	통제관	차 장	
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5급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			
	재난일지 기록 배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본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부회의위원 위촉 및 해촉		○		
	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		
	회의소집 방침결정			○	
	회의소집 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	○			
재난 교육·훈련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			○		
각급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감독				○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		
예비특보, 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각종 조치사항		△			
상황근무자 및 실무반 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주민대피명령				○	
방재용 자재의 수송 및 지휘에 관한 사항			○		
본 부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내시 및 배정요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급량비 등 지출요구	○			
수난구조에 관한 사항	헬기 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		
	수난구조상황 파악	○			
군지원 사항	군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및 협의		○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본부장 결 재
		담당관	통제관	차 장	
	군 장비 및 인력지원사항 파악	○			
구호활동에 관한 사항	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		
	구호활동상황 파악	○			
수송·통신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		
	통신시설의 수리 및 보수	○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응급복구용 자재·장비·인원의 동원		○		
	응급복구용 자재장비인원 동원사항 파악	○			
피해종합 대책에 관한 사항	피해상황 자료수집	△			
	재난사태선포 건의 검토보고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중앙수습지원단 현지 파견			○	
	중앙수습지원단 활동상황 파악	○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합동피해조사단 요원차출 및 현지 파견		○		
	합동피해조사 결과보고		○		
	자연재난복구비용단가 협의조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검토보고				○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및 심의·확정			○	
	재난복구계획 통보	○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		
	피해조사 담당공무원의 교육·육성		○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잔액 사용 승인		○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본부장 결 재
		담당관	통제관	차 장	
	복구용 자재수급 대책	○			
	복구사업의 지도·점검·관리		○		
	일정규모이상 복구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전 사전심의		○		
	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관리 및 결과보고		○		
	복구사업의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사전심의를 위한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운영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절차 완료 전 시행 개발사업의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개발관련 위원회의 방재분야전문위원 추천	○			
	재해원인조사·분석 및 평가		○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운영		○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			
	피해조사 등 타인의 토지 출입 또는 일시사용		○		
	내풍설계기준의 보완 요구	○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본부장 결 재
		담당관	통제관	차 장	
	홍수에·경보와 각종 수문관측 및 수문정보에 관한 자료 파악	○			
	지진방재대책 조사·연구 및 지진재해경감 대책		○		
	내진설계대상 시설물에 대한 보완 요구	○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계획 보완 요구	○			
	긴급지원 대상지역 지원단 구성 및 현장파견		○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배포	○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점검, 평가·포상		○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		
	한국방재협회 위탁 시행		○		
	자연재해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역본부 정기 평가·포상			○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	
본부장, 차장 지시사항 처리			○		
그 밖에 재난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제26호제1항 관련)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 내용	피해발생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또는 읍·면·동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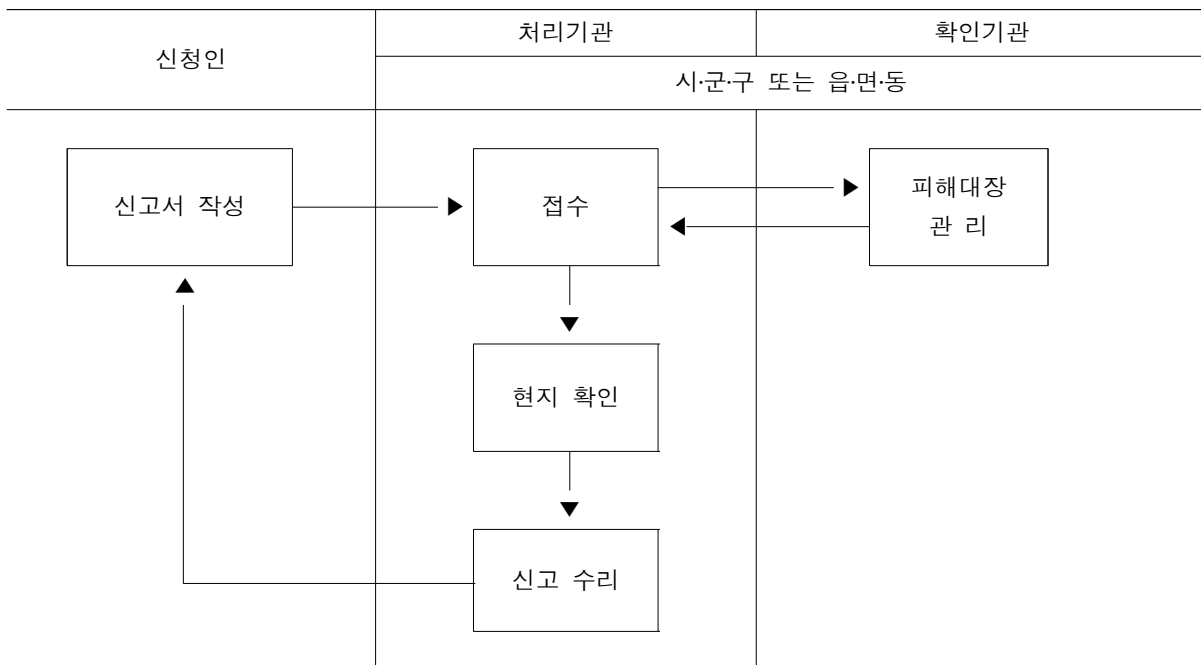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관리번호:]

피해 대장(제26조제2항 관련)

확 인 자	중양 직	성명	(인)
	시도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조 사 자	직	성명	(인)

①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금액	천원

② 피해·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금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3] 피해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화장품산업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2월 31일

남원시 조례 제 1139 호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를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효율적인 운영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제3호에 따른”을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포장 등”을 “포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위하는”을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란(이하 “센터”라 한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는 법인격 및 명칭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해 필요한 경우에”를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위”를 “경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화장품산업에 관하여”를 “화장품산업에”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액”을 “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화장품산업지원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2회에 한정하여”를 “두 번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를 “사람이 해당 사안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사안에 관하여”를 각각 “사안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그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활동에 대하여”를 “활동은”으로, “여비등을”을 “여비 등을”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으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위치) 센터의 주된 위치는 남원시 소재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18조(재산) 센터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업)”을 “(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

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위치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금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명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1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을 경유하여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임원) 센터에는 이사장·이사 및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1조 앞의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사업)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 지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마련
2. 남원 CGMP 생산시설 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
3. 제품의 성능시험 및 품질검사
4.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품질관리 등 실용화
5. 소재의 발굴 및 기술·경영인력 양성교육
6. 창업보육 및 화장품관련업체 유치·육성 지원
7. 센터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 지원
8.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
9.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연구실 운영
10. 남원시 등 관련 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11.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
12.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2조를 제28조로 하고, 제4장에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수익사업) 센터는 제19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 재단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3조(재산출연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 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타 기관에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 받을 수 있다.

제24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남원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보고 및 감사) 시장은 센터의 경영상황을 보고 받고 서류의 제출 요구 및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도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을 검사할 수 있다.

제26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과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제26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5장에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준용) 보조금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남원시</u>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범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남원시 화장</u> <u>품산업지원센터</u>를 설립하고 <u>효</u> <u>율적인 운영과</u> -----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화장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p> <p>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u>제3호에</u>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p> <p>나. 그 밖에 용기 및 <u>포장등</u> 화장품을 효과적으로 보관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자재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산업</p> <p>2. “화장품산업 사업자”란 화</p>	<p>제2조(정의) ----- ----- <u>뜻은</u> ----- 1. ----- ----- ----- 가. ----- <u>제3호까지의</u> <u>규정에</u> <u>따라</u> ----- ----- ----- 나. ----- <u>포장 등</u> ----- ----- ----- 2. -----</p>

장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생략)

<신설>

제3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화장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생략)

② 시장은 화장품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화장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 하는-----
-----.

3. (현행과 같음)

4.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란(이하 “센터”라 한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는 법인격 및 명칭을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필요한 경우-----
-----.

- 1. ----- 경영-----

2.·3. (생 략)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
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
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화장품산업업무 담당국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화장품산업에 관하
연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
진 사람

③ (생 략)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 략)

3. 보조금 지원대상·지원범위
·지원액에 대한 사항

4. (생 략)

5.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6.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 호선(互選)한다.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화장품산업에-----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 기능) -----
-----.

1.·2. (현행과 같음)

3. ----- 지원대상·지원범위
·지원금액-----

4. (현행과 같음)

5. 센터-----

6.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임기와 직무)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
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
 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생략)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
 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③ (생략)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 임기와 직무) ① -

 ----- 두 번만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① -----

 -----.

1. -----
 --- 사람이 해당 사안에 ---

2. (현행과 같음)

3. ----- 사안에 -----

4. ----- 사안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회의) ① -----
 ----- 의장 -----
 ---.

② (생략)

②·③ (생략)

제16조(수당 및 여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7조(설치) ① 시장은 남원시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서 화장품 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화장품산업진흥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③ 센터는 공익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재단 법인으로 한다.

제18조(조직) ① 센터의 센터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수당 및 여비 등) -----

활동은-----

----- 여비 등을 -----

제4장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제17조(위치) 센터의 주된 위치는 남원시 소재에 두며, 필요시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18조(재산) 센터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센터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화장품분야 사업 발굴 및 수행
2. 화장품산업 제품 개발, 생산 등을 위한 시설구축
3. 화장품산업 제품 및 재료의 생산·유통·거래
4. 화장품분야 연구개발, 품질 관리, 인력양성,
5. 화장품산업 진흥 및 센터운영을 위한 수익사업과 지원사업
6. 남원시에서 구축한 CGMP 시설에 대한 위임을 받아 위탁사업자 선정 또는 위탁운영
7. 화장품 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학계·연구기

제19조(정관) 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있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위치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금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명에 관한 사항

- 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 8.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 9.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0조(운영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하려는 때에는 미

-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을 경유하여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임원) 센터에는 이사장·이사 및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을 제외하고는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21조(사업)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 지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마련
2. 남원 CGMP 생산시설 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
3. 제품의 성능시험 및 품질검사
4.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품질관리 등 실용화
5. 소재의 발굴 및 기술·경영 인력 양성교육
6. 창업보육 및 화장품관련업체 유치·육성 지원
7. 센터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 지원
8.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
9.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연구실 운영
10. 남원시 등 관련 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신 설>

제22조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11.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

12.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2조(수익사업) 센터는 제19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 재단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8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23조(재산출연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 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타 기관에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 받을 수 있다.

제24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남원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보고 및 감사) 시장은 센터의 경영상황을 보고 받고 서류의 제출 요구 및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도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을 검사

<신 설>

할 수 있다.

제26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과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무
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
다.

<신 설>

제5장 보칙

<신 설>

제27조(준용) 보조금은 이 조례에
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를 준용한다.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축제관광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2월 31일

남원시 규칙 제 547 호

남원시 축제관광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축제관광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선하며”를 “호선(互選)하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위촉받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중 “참석한 시”를 “참석한 시 소속”으로,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남원시 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규칙 제494호 남원시 축제관광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효력이 지속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그 효력이 지속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남원축제관광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p> <p>1. ~ 3. (생략)</p>	<p>제2조(구성) ----- ----- ----- ----- 호선(互選)하며----- -----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4조(운영기간) 위원회는 위촉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단,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p>	<p>제4조(임기) 위촉받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8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수당) ----- 참석한 시 소속 ----- 위원에게----- -----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

남원시 고시 제 2014 -1581호

2015년도 건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등』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남 원 시 장

- 다 음 -

1. 2015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국세청 기준시가
2.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따로붙임
(세부내용은 남원시 홈페이지 및 시(읍·면·동) 민원실에 비치)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